『KB퇴직연금정기예금』특약

제1조 적용범위

KB퇴직연금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합니다.

제3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4조 저축금액

이 예금의 저축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5조 계약기간

- ① 이 예금은 고정금리형 또는 변동금리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고정금리형의 계약기간은 1개월에서 60개월(5년) 이내에서 연.월.일로 합니다.
- ③ 변동금리형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신규 가입할 때 3개월회전 또는 6개월회전 중 1가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6조 자동재예치

- ① 고정금리형 중 일 단위 계약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계약기간이 12개월인 월단위 계약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 ② 고정금리형 중 연,월단위 계약과 변동금리형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 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 ③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7조 이자

① 이 예금의 만기에는 약정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만기이자율, 만기일이 완전히 지난 후 지급일 전

날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후이자율로 셈하며, **만기일 이전에 제8조①항의 사유로 분할인출하는** 경우에는 분할인출이자율, 만기일 이전에 전액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 단, 제8조①항의6「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의 분할인출을 할 때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 치일(변동금리형은 회전기간별 시작일)에 적용된 이자율(가산금리 포함)로 셈합니다. (신규 또는 재예치후 1개월 미만의 분할인출 포함)
- ② 고정금리형은 해지 사유에 따라 신규일 및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이 적용되며, 변동금리형은 해지 사유에 따라 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금리형을 만기일 이전에 분할인출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③ 이 예금은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미만에 분할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 분할인출

- ① 이 예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 1.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2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 3. 퇴직연금가입자가 기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제도 전환을 위한 **가입자제도전환** 또는 **가입자이전**의 경우
- 4. 퇴직연금 전체(또는 일부)를 당행 내에서 다른 퇴직연금계약으로 이전하는 **국민은행 내 계약이** 전의 경우
- 5.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 6.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
- 7. 다른 상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을 매도하는 교체매매의 경우
- 8. 가입자의 사망
- ② 이 예금은 만기(중도)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가입자별로 인출횟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출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제9조 거래방법

- ① 이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간에 전문(電文)으로 거래하여, 통장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예금 계좌의 해지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세제혜택

이 예금은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11조 예금자보호

- ① 이 예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당행에 있는 예금주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서 운용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